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98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윤재옥 · 이주영 · 이인선
백종헌 · 정성국 · 조정훈
정희용 · 김기웅 · 김태호
엄태영 · 추경호 · 배준영
김도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변조·누

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종사자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 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보 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 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u>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

1. ~ 9의3. (생략) <u><신설></u>	1. ~ 9의3. (현행과 같음) <u>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한 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 또는 영업점</u>
10. ~ 14. (생략) ②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